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이렇게 주고 받아야 합니다

8.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과세자에 한함)

-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 송장 ·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 송장 ·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니 거래쌍방 · 거래일자 · 재화의 품명 ·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채고거래 · 하차장 반출 · 외주가공 의뢰 · 위탁상금 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이동의 경우

2.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할 때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다른 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안내 ③



글 / 임현석 세무사

- 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중 개인 과세사업(겸업자 포함)는 별표양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주점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9. 영수증

1.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 일반과세자중 다음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① 소매업
- ②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 ③ 숙박업
- ④ 목욕·이발·미용업
- ⑤ 여객운송업
- ⑥ 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행정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다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함)
- ⑦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⑧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⑨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후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사업중 '①'~'③'과 '⑤'(전세의 경우에 한함) 및 '⑦'~'⑧'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영수증으로 보는 계산서

-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일자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봅니다.
-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 ②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③ 금전등록기영수증과 신용카드 카드매출전표
- ④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전력사용료 영수증
- ⑤ 기타 앞의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3. 영수증의 교부의무 면제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의무도 면제됩니다.
- 다만,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